

# 제82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18.7.26(서면심의)

## □ 안건명 : 「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」 발주심의

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, 별첨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『조건부 채택』 의결함.

### 【 주요 심의내용 】

- “보행친화적 가로의 완성”(지침서)을 위해 보도상의 시설물 영역설정, 보도 유효폭 확대, 자전거도로, 띠녹지, 고원식 횡단보도, 쌈지공원, 시설물통합 및 지중화, 관광버스 주차장 등의 “가로설계 및 관리 매뉴얼화를 검토할 것
- 총괄기획가와 총괄계획가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니 용어 통일 필요
- 사후관리를 통한 Feedback 후 관리·정비에 적용
- 가로의 유형분류 → 설계기법도입 → 해결안도출 → 설계기법 조합 → 설계가이드 라인작성 → 실시설계 → 통합관리방안 적용의 PROCESS로 진행을 검토할 것
- 7개 길 주변지역의 조경에 차별화되고 각 길별 문화상에 어울리는 조경(조경구조물 포함) 및 녹화(벽면녹화포함) 계획 수립 요망
- 사업대상 지역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반영
  - 연결길 중심 주변지역 등의 상가·주택소유자 및 임차상인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진행
-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, 설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T/F팀을 구성·운영 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.

첨부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#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전명 : 「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」 발주심의

분야	채 택 의 견	비 고
건축 계획	<p>1. 총괄기획가(과업내용서 4쪽 2.항)와 총괄계획가(5쪽 4.나.운영지침과 6쪽 1. 다.1).라))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니 용어 통일 요.</p> <p>2. 7쪽 3)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은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되어있으나 착수일은 계약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니 보완 요</p> <p>3. 13쪽 파.항에 “※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의 종류, 수량에 대해 기재하며, 필요한 경우 제공할 자료의 보관방법, 사용방법, 반납일정 등을 기재할 것.”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본 문구는 제공자료 과업내용 작성요령으로 보이며 본 과업내용에는 기재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본 문구 적정성 검토 요</p> <p>4. 17쪽 성과품 목록중 과업수행서 및 착수계와 보안대책 관련자료 비고의 “착수전”은 “착수시”로 수정 요</p>	

2018년 7월 일

심의위원 : 박 의 수 (인)

#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전명 : 「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」 발주심의

분야	채 택 의 견	비 고
	<p>1. 서울시 가로의 문제점은 가로의 여러구성요소의 통합적 정비. 관리의 미흡으로 가로구성요소의 상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 서울로 연결길은 통합적인 가로정비를 통한 “완전가로구현”을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권고드립니다.</p> <p>2. 주변의 공개공지, 도로다이어트, 조업공간, 포켓주차장, 교통섬 설계기법 등을 적극 도입</p> <p>3. 가로의 유형분류 -&gt; 설계기법도입 -&gt; 해결안도출 -&gt; 설계기법 조합 -&gt; 설계가이드라인작성 -&gt; 실시설계 -&gt; 통합관리방안 적용의 PROCESS로 진행을 권고드립니다.</p> <p>4. 사후관리를 통한 Feedback후 관리.정비에 적용</p> <p>5. “보행친화적 가로의 완성”(지침서)을 위해 보도상의 시설물 영역설정, 보도유효폭 확대, 자전거도로, 띠녹지, 고원식 횡단보도, 쌈지공원 ,시설물통합 및 지중화, 관광버스 주차장 등의 “가로설계 및 관리 매뉴얼화 기대”</p> <p>6. 모든 사람을 위한 가로 디자인 (Design for All) 구현. 물리적 공간 뿐이 아니라 이용자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(Universal Design) 적용을 과업지시서에 추가해서 설계자가 UD 디자인 측면에서 디자인이 되게 할 것.</p> <p>7. 서울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            1) “보행자중심의 가로”      2) “시민이 주인이 되는 가로”            3) ‘지역특성을 고려한 가로공간조성’            4) 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로환경 조성            ---&gt; 기존가로정비의 가로설계.관리 매뉴얼을 기대함.</p>	

2018년 7월 일  
 심의위원 : 이 상 곤 (인)

#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전명 : 「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」 발주심의

분야	채 택 의 견	비 고
도로	<p>1. 연결길 7개소 조성관련 기본계획 수립(P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7명의 공공건축가의 자격기준을 객관성,투명성 있게 제시 하여 독립적이고 질 높은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.</li> </ul> <p>2. 과업수행 일반지침 -&gt; 나.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(P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약상대자 선정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을 명시 하여 하도급 용역참여 대상인 공공건축가의 보호를 검토 바랍니다.</li> </ul> <p>3. 바. 관련사업과의 협업 및 전문가 자문 -&gt; 2)전문가 자문(P1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야별 전문가의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.</li> </ul> <p>4. 불입 보안 서약서(P19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도급 용역 참여 및 공공건축가의 보안 서약서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.</li> </ul>	

2018년 7월 일

심의위원 : 송 은 정 (인)

#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전명 : 「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」 발주심의

분야	채 택 의 견	비 고
교 통	<p>1. I.과업의 개요 중 시간적 범위 : '2018 ~ '2019로 되어 있으나 본 과업의 제목 및 목적인 기본계획의 범위가 2019년까지 라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(p3)</p> <p>2. I.과업의 개요 중 4. 과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'18년 12월 31일까지 길어야 4개월 정도이나 제시된 보고일정에 의하면 3개월안에 최종보고(준공예정일 30일전)까지 제출하게되어 있어 7개 길에 대하여 각각 공공건축가의 하도급계약체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과업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(p3)</p> <p>3. II. 과업내용에 용역수행자와 7개 각 길별 공공건축가가 수행하는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(p4)</p> <p>4. II. 과업내용 중 나.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조사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(p4)</p> <p>5. II. 과업내용에 각 길에 대한 공공건축가 활용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괄기획가가 주재하는 TF팀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총괄기획가는 발주처인 시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수행자가 담당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(p4)</p> <p>6. II. 과업내용 4. 골목건축가 운영 지침 마련 내용 중 오타(추지-&gt;취지) 수정이 필요함(p4)</p>	

<p>교 통</p>	<p>7. II. 과업수행 일반지침 중 파.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내용 중 ‘※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의 종류, 수량에 대해 기재하며, 필요한 경우 제공할 자료의 보관방법, 사용방법, 반납일정 등을 기재할 것’에 적정한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없으면 생략이 필요함(p13)</p> <p>8. IV. 보고서 및 성과품 중 나. 성과품 목록의 표의 비교내용이 일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(p17)</p>	
------------	--	--

2018년 7월 일  
 심의위원 : 고 주 연 (서명)

##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전명 : 「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」 발주심의

분야	채 택 의 견	비 고
전 기	“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”의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특이사항 없음	

2018년 7월 일

심의위원 : 기 유 경 (서명)

#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전명 : 「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」 발주심의

분야	채 택 의 견	비 고
조 경	<p>1.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서 주변지역 보행확장(방사형)에 미래상(뻗어나가는 의미, 70-→ 17-→ 미래) 설정의 의미를 부여하여 경관축 조성</p> <p>○ 인문,자연, 사회환경분석을 통해 조경 및 경관의 문화상 수립.</p> <p>2. 7개의 길에 각각 다른 공공건축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유지를 위한 총괄기획가 및 골목 건축가에 협조할 주민참여 (경관법 19조: 경관협정의 체결) 안 활용.</p> <p>3. 7개 길 주변지역의 조경에 차별화되고 각 길별 문화상에 어울리는 조경 (조경구조물 포함) 및 녹화(벽면녹화포함) 계획 수립요.</p>	

2018년 7월 일

심의위원 : 강 준 석 (서명)



#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「서울로 연결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」 발주심의

분야	채 택 의 견	비고
건축	<p>1. 1. 연결길 7개소 조성관련 기본계획 수립 -&gt; 가.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방향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 할 것(3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추진에 따른 장애요인 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</li> <li>○ 주변지역 및 건축물과 연계된 입체적인 보행네트워크 구축방향 제시</li> </ul> <p>2. 1. 연결길 7개소 조성관련 기본계획 수립 -&gt; 나. 연결길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 할 것(4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</li> <li>- 관련 법규 및 각종 지침, 기준 검토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건이 비슷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자 면담을 실시한 후 사례별 위험관리 및 합리적인 대안 설정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대상지역 이해당사자들 의견수렴 반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결길 중심 주변지역 등의 상가·주택소유자 및 임차상인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진행</li> </ul> </li> </ul> <p>3. 1. 연결길 7개소 조성관련 기본계획 수립 -&gt; 다.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 할 것(4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원투자 계획 및 최적 사업추진 방안 등을 제시</li> <li>○ 사업별·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전략계획 구상</li> <li>○ 방사형 보행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도시재생 방향 및 전략 제시</li> </ul> <p>4. 이용자의 접근성, 편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반영 필요</p>	

분야	채택의견	비고
건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(Universal design)의 원리와 배리어 프리 (Barrier Free)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 도모</li> <li>○ 장애인·노약자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강화 지침 「노약자·장애인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강화 추진계획」 (기술심사담당관-17770, '16.10.19.)을 준수</li> </ul> <p>5. 색채디자인 및 CI 계획(내·외장 주요자재)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공사비 반영여부 및 반영 범위를 결정할 것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기</li> <li>○ 표시체계는 일반인·장애인용과 구분하고 채색시안 및 설치 위치를 설계에 반영</li> </ul> <p>6.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, 설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T/F 팀을 구성·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.</p>	
전기	<p>7.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시빛정책과에서 시행 중인 “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개선 계획 수립용역”과 연계하여 과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.</li> </ul>	
토목	<p>8. 보·차도 재포장, 보도 폭 조정, 수목식재 및 조형물 설치 등의 계획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‘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하.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’에 “도로설계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.”는 내용을 추가할 것</p>	
조경	<p>9. 1)관련계획 및 사업 간의 협력에 다음 내용을 추가 할 것(p.1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역수행중 서울로 유지관리부서인 서울로운영단 및 중구청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범위 변경 및 기간연장 등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협의 방안을 추가할 것</li> </ul>	

분야	채 택 의 견	비고
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시 동네숲(골목길) 가꾸기 사업 등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</li> </ul> <p>10. 설계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경분야의 전문가 참여는 아래와 같이 실효성 있게 수정할 것(p.1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는 조경분야 자문위원으로 서울시 ‘공공 조경가’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</li> </ul>	

2018년 7월 일  
 심의위원 : 김홍길 (서명)